

의안번호	2216558
의 퇴 인	정진욱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1.
추 계 번호	26A0697

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2조의2 (전담기관의 지정 등)	-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)을 지정하고,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업무의 지원 -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·정지 업무의 지원 -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·현장조사 및 제20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의 지원 -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관련 정보의 관리 -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에의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-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2조의2 (전담기관의 지정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한국산업표준(KS)은 광공업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,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 - － 국가기술표준원의 「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(2025.11월)」에 따르면, 한국 산업표준 인증 수는 2025년 기준 14,782건으로, 8,681개 공장이 인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
- 개정안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의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 구체적 지원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
 - 안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는 법 제32조¹⁾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음
 - －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²⁾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관한 조사·연구·보급, 한국산업표준 인증 심사 업무, 인증심사원의 자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, ISO·IATF 등 국제표준인증 심사 업무 등을 실시하고 있음

1) 제32조(한국표준협회) ① 인증받은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표준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<후 략>

2) 제34조(협회의 업무)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한국산업표준 및 간행물의 발간·보급과 한국산업표준 실시의 촉진
2. 국제표준·외국표준, 그 밖의 각종 표준의 수집·보급
3.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·연구·개발·진흥·진단·지도 및 교육
4.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촉진하는 인증·평가
5. 단체표준화 활동의 지원
6. 국제표준화 활동의 지원
7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

- 현 시점에 개정안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과 현행 한국표준협회 간 역할 분담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알 수 없으며, 전담기관의 조직 규모, 예산 지원 기준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경비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움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박선아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선아	02-6788-4652	sunapark@nabo.go.kr